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설치하고,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 표준화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954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1)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된 기관별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에 제출하도록 함

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운영(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

2) 전략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촉진 사업의 범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사.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아.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 제26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제정안이므로 생략

2) 입법예고(2024. 3. 14. ~ 4.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관별 시행계획을 통합해 매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 이행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된 이행실적을 통합해 전략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행정안전부
4. 환경부
5. 고용노동부
6. 국토교통부
7. 중소벤처기업부
8. 금융위원회

②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를 대표하고, 전략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전략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전략회의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전략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⑨ 전략회의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전략회의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략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전략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전략회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략회의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전략회의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전략회의 위원의 해촉) 의장은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2항제4호의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하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라 한다)의 인력의 직무별 수요 및 공급 현황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3. 미래자동차 산업 전망
4. 미래자동차의 공급망 구조
5.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투자 현황
6.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 현황
7.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촉진 사업)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술수준의 조사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3. 기술협력·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
6. 그 밖에 미래자동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2항제3호의 공동연구개발사업
2. 법 제18조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3. 법 제22조에 따른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기술 역량 확보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각호의 기업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연구·기술 개발 관련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 미래자동차 분야의 연구시설을 갖춘 외국연구기관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5. 미래자동차 분야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기술의 이전·공유·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하려는 기관
6. 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정보·설비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컨설팅
3.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의 우선 구매
4. 연구개발에 사용되거나 생산된 연구기기·설비 및 시제품 등의 사용권 부여 또는 그 알선
5.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

제10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3을 말한다.

③ 연간 총매출액과 연구개발비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총매출액과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된 우수 기술인력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현황, 부채비율, 공공재정의 건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한 제재처분 여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말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3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지정요건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⑤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제12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협력모델의 구축·발굴 및 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에의 우선입주

의 알선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기술 관련 선정평가의 우대
4. 개발된 미래자동차 기술의 이전 또는 사업화의 지원
5. 외국인투자의 유치, 국제기술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6. 미래자동차 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화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①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허, 기술동향 등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위한 정보의 제공
2.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3. 국내외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래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기술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의 협력모델의 구축과 발굴에 관한 사항
5. 법 제29조의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6. 협의체 구성원 간 또는 구성원과 기업·대학·연구기관 및 관련기

관·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협의체 구성원 간 또는 구성원과 기업·대학·연구기관 및 관련기

관·단체 간의 연구시설·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③ 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게 참석하게 해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중소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자료 등의 지원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융자 및 융자 알선

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 관한 교육, 컨설팅 및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원활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4조(디지털 혁신 촉진)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2. 디지털 혁신 지원 인프라 구축

3. 디지털 혁신 모델 확산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해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협력모델의 발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력모델의 구축·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류 프로그램의 운영 등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연계·협력

2. 협력모델의 구축·발굴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3. 제3항에 따라 발굴된 협력모델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협력모델로의 추천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요창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할 때 협력모델의 기술개발 품목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력모델의 발굴을 위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2항과 이 영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법 제17조제2

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에 준용한다.

제16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교육기관 외의 전문인력양성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2.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교원 확충
3. 퇴직근로자 등 미래자동차 분야 숙련 인력이 보유한 기술·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업
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요에 연계한 정비인력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5. 전문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업
6.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사·분석·평가·거래 등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계약학과등의 설치 지원)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등을 정해 공고해야 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산업체 부담금의 100분의 50 이하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의 100분의 95 이하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단지·지구·지역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에 따른 단지·지구·지역 등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

특구

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추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단지·지구·지역 등에 입주할 예정인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수
2. 해당 단지·지구·지역 등이 위치할 주변 지역의 주요 산업과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
3. 해당 단지·지구·지역 등의 지정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4. 그 밖에 해당 단지·지구·지역 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기업과 연구기관 부지의 조성, 임대료 지원,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입주기업 종사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용수공급,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4. 인력양성·활용 및 재직자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5.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연대협력 등 생산성향상 및 수출촉

진에 관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화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또는 연구기관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제19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활용)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국공립대학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증·생산 관련 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개방하는 실증·생산 관련 시설의 종류와 위치, 개방시간, 활용조건·방법·비용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증·생산 관련 시설을 개방해야 하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개방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기관의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2. 법 제17조에 따른 협력모델을 통해 미래자동차 부품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기업
3. 중소·중견기업인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업에 공동활용 계획 및 예산 계획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법 제2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 결과
2.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전시행사 등에 관한 정보

②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2. 미래자동차 부품 수요기업
3.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기술 및 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보유·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④ 그밖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국제협력)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및 미래자동차 기술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 활동
2.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지원

3. 외국인투자의 유치사업

4. 「국가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국제개발협력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중소·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사업의 전환지원 특례) ① 중소기업이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분야가 미래자동차 부품사업 분야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중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의 사업전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신청을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미래자동차부품사업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6조제12항에 따른 신산업판정위원회의 신산업 판정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신청을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중소·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사업으로의 전환지원) 법 28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보증 등 금융지원 및 알선
2. 유희설비(遊休設備) 유통 지원
3. 판로확보 지원
4.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제25조(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규제합동개선반(이하 “규제합동개선반”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규제의 이해관계자·전문가
- ② 규제합동개선반은 전화조사, 대면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로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③ 규제합동개선반은 제2항에 따라 발굴한 규제 및 마련된 개선방안을 전략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 ④ 전략회의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규제 및 개선방안을 심의·조정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략회의에서 심의·조정한 규제 및 개선방안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관련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와 제5항에 따라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통지된 규제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26조(규제개선 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개선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결과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표준의 제정·시행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8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
3. 법 제11조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표준화 지원
4. 법 제14조에 따른 협의체 운영의 지원

5. 법 제16조에 따른 디지털 혁신 촉진의 지원
6. 법 제17조에 따른 협력모델의 구축·발굴의 지원 및 실태조사·수요조사
7. 법 제21조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활용의 지원
8. 법 제23조에 따른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연 락 처	(044) 203 - 4321